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## 國內事件

## 特許拒絕査定

〈大法院 第2部 判決〉(1985. 12. 24)

事件番號 : 85후 14

裁判長 : 정 대 균

關與法官 : 신 정 철 · 김 형 기 · 이 정 우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: 카논가부시기가이샤(대표 : 가기류우사부로오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3. 原審決 : 特許廳 1984. 12. 29字, 1983年 抗告審判(絶) 第677號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.
5. 理 由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8. 8. 17일에 독일에서 발간되는 특허공보에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을 확정 한 후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.

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 바, 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

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포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.

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루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<끝>

가 정 에 서	뿌 린 정 직	사 회 에 서	꽃 핀 신 령
에 너 지 는	국 력 이 다	아 께 써 서	애 국 하 자